

의안번호	2216006
의 퇴 인	김동아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.
추계번호	26A0166

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의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,000만원(연평균 1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기본 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	50	—	—	—	—	50	10
합 계	50	—	—	—	—	50	10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중소기업 기업 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5년마다 중소기업 승계 촉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함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로 중소기업 승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7조(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의 운영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, 승계 후 사업재편을 통한 경영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중소기업 승계 지원 기관(이하 “지원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고 관련 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「기술보증기금법」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－ 2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－ 3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－ 4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－ 5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－ 6.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상공회의소 －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3	안 제10조(중소기업 승 계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하여 기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, 경영·기술·회계 자문, 융자·보증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11조(중소기업 승 계 지원기관 이용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 등록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업승계 지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기관을 통하여 진행되는 승계 관련 자문, 가치평가,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안 제12조(융자 지원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승계자가 피승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승계대상 지원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3조(보증 지원)	정부는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승계자가 피승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승계대상 지원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, 투자, 유동화회사보증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4조(보증 연장 지원)	정부는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 후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·운용하도록 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15조(승계 후 사업재편 지원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 후 경영성과 확대를 위한 사업재편 시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기업승계 후 사업재편 원활화에 관한 특례 적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9	안 제25조(세제 지원)	○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승계를 위한 등록신청을 완료하여 기업승계를 추진중이거나 승계를 완료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26조(인력 지원 및 특례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승계 등록기업의 인력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9조, 제10조 또는 제35조의5에 따른 사업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3 또는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	재량규정
11	안 제27조(판로 지원 및 특례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하여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,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판로지원사업을 승계지원 등록기업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2	안 제28조(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)	○ 정부는 기업승계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조정,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－ 1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업승계 중소기업의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교육 － 2. 「고용보험법」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○	—
2	안 제7조(중소기업 승계 지원 기관의 운영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, 기업승계에 필요한 자문, 용자·보증 연계 등을 지원할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구체적 지출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
3	안 제10조(중소기업 승계 지원)	X	
4	안 제11조(중소기업 승계 지원 기관 이용 지원)	X	
5	안 제12조(용자 지원)	X	
6	안 제13조(보증 지원)	X	
7	안 제14조(보증 연장 지원)	X	
8	안 제15조(승계 후 사업재편 지원)	X	
9	안 제25조(세제 지원)	X	
10	안 제26조(인력 지원 및 특례)	X	
11	안 제27조(판로 지원 및 특례)	X	
12	안 제28조(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)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

○ 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¹⁾

[표 1] 중소기업 기업승계 M&A 지원사업 예산 현황: 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내역사업명	내내역사업명	예산
벤처캐피탈 선진화 (5231-302)	기업승계 M&A 지원	간담회 등 인식확산	150
		수요발굴	350
		기초컨설팅	70
		종합컨설팅	280
		매칭 인프라 구축	350
합계			8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, 본 추계에서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
-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

-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은 추계 첫 해부터 5년마다 연구용역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

1) 정부는 「M&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」(2025.12.24.)을 수립·발표하였으며, 이에 따라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2026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

용하여 2027년에 5,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

- 유사 연구사례로는 “M&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방안”((사)한국자본시장연구원, 2024년, 5,000만원) 등이 있음
 - 시행계획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·시행하므로 추가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- 5년 주기를 고려하여 법 시행 첫해인 2027년에 5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
□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5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2]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	50	—	—	—	—	50	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